제천약초 세계 명품화

97년까지 40억투입 중점개발키로

충북 제천시는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특산품인 황기·당귀등 약초를 세계 일류 명품으로 중점 개발키로 했다. 제천시가 마련한 약초 세계일류명품화사업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시장개척과 함께 유통·가공·저장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지원, 농가소득 증대와 국내 및 국외의 판로개척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

이에따라 시는 황기·당귀·황정·고본·인삼 등 5대 품목을 전략 품목으로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품질 향상을 위해 19억원을 투입, 제천시 두학동과 수산·덕산·송계면에 공동육묘장을 비롯해 재배시설·생약조제시설·품질개량포 등을 갖춘 생약생산 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약초전업농 육성을 위해 약초재배농가에 한 가구당 5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약초재배기술의 고급화와 영농의 현업화를 위해 현재 조직, 운영중인 2개 약초작목반을 3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약초의 상품성과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금성농협의 약초가공공장과 수산면 대전리의 산지약초 가공단지, 고본주가공공장등에도 가공원료 구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제천약초의 품질인증과 고유상표 및 포장재를 개발, 상품의 고급화도 추진하는 동시에 약초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약초수확기와 다목적관리기·건조기·탈피기 등을 보조 지원키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산등 값싼 외국산 약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 3대 약초시장중의 하나인 제천약초시장도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천약초 세계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약재 유통관련 제도개선 방안

〈제1안〉

○식품위생법에서 농산물의 단순가공행위는 식품가공법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허용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농가가 자가생산한 약용작물을 한약재로 단순가공(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하는 경우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농산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단지, 약성이 강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제외)'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유통관련법령(예, 농수산물가공 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포장지 겉면에 품질표시(산지, 중량, 생산연도, 가공자소재지 등)를 의무화 하도록 함

〈제2안〉

○약사법에서 한약재를 의약품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관리하되 농가가 자가생산한 약용작물을 한약재로 단순가공(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하는 경우는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추고 해당지역 시장·군수에게 『한약재가공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포장하여 판매할 때에는 포장지 겉면에 품질표시를 의무화하며(단, 수입한약재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품질표시제 의무화)

—사전 품질검사를 위하여 제조관리사를 두되 일반 의약품제조업 경우(한약사, 약사를 둠)와 달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완화토록 하여

○생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등의 『한약재 가공업』 개설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생산한 한약재도 의약품판매업자가 진열·저장·판매할 수 있도록 함

〈건의〉 : 제2안

○한약재의 단순가공행위는 양약중심의 의약품제조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일명 『한약재가공업』으로 관리하되, 해당지역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업개설이 가능토록 하고, 한약재의 품질향상과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표시제도의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95. 4. 1부터 시행예정인 보건복지부의 『규격품대상지정 고시』시행은 보류하도록 함

※ 대안비교

구분		내용	장점	단점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생산농가 및 단체가 자가생산한 한약재를 단순가공(건조, 절단, 포장등)하여, 일반농산물처럼 자유롭게 생산·유통·판매	-시장기능에 의한 한약재의 생산·유통	-소비자보호(품질관리) 미흡 -중간유통상의 부정유통등의 질서문란
보건복지부(안)		-한약제도 의약품의 일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규격품만을 의약품 판매업자가 진열·저장·판매할 수 있도록 함	-규격품관리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한약재 생산·판매의 진입 제한으로 인한 생산농가의 부가소득 감소 및 기반 위축 우려
연구위원	1안	-한약재의 단순가공행위는 의약품제조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사물 유통관련법령으로 관리 -품질표시 의무화	-품질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생산농가의 지원·육성 및 수급 조절기능 강화	-한약재 가대부분 약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국민보건 저해 우려
	2안	-한약재의 단순가공행위를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 『한약재가공업』 신고대상으로 하여 시·군에 신고토록 함 -품질표시 의무화	-품질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진입제한을 완화하여 생산농가의 업개설 용이 및 경쟁력 제고	-제조업 허가를 받은 기존 업체의 반발 예상

지황 백출 전면개방되어선 안된다

지황, 우수품종 개발로 국내자급 가능

탄력적 운영 앞으로도 견지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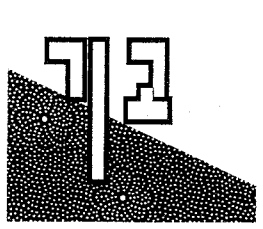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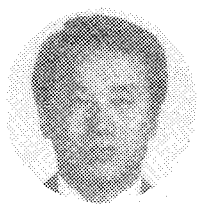

김 상 현
(농민신문사 취재국 부장대우)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황과 백출의 수입자유화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생약의 모든 품목을 수입자유화 해놓은뒤 약사법에 근거해 지황·백출등을 41개 품목은 탄력운영 품목으로 고시, 수입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움직임은 지황과 백출을 탄력운영품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제약업계쪽에서 지황과 백출의 물량부족을 강력히 항의해와 수급조절 측면에서 농림수산부 등에 지황과 백출의 생산동향과 수급현황을 조사의뢰해 놓은 상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관계자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업계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지황과 백출을 탄력운영품목에서 제외해 수입을 완전자유화까지 시키겠다는 점을 헤아려볼 수 있다. 생약업계가 우려하는 점은 바로 이 완전수입자유화 조치다. 두고봐야 할 부분이지만 만에 하나 지황과 백출이 탄력운영품목에서 제외되면 생약업계가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림수산부 관계자의 견해는 보건복지부가 섣불리 지황과 백출을 완전 수입자유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이 농림수산부의 견해다』라면서 복건복지부에 이같은 뜻을 전달, 지부가 맡고있어 우리로서는 결정권이 없지만 수입을 완전 자유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들고있다. 무엇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생약재이기 때문에 농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보조 지원키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산등 값싼 외국산 약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 3대 약초시장중의 하나인 제천약초시장도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천약초 세계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뉴질랜드 생약자원 공동연구·개발 본격화

매년 10만불 유치… 녹용 약효규명

한국생약학회(회장·元道鎭)는 2월11일 뉴질랜드 양록위원회와 공동으로 「제1회 한·뉴질랜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녹용을 비롯한 양국의 전통 천연 약물 자원에 대한 공동연구 및 개발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뉴질랜드측으로부터 매년 10만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현지에서 활동중인 한국교포 생약재 무역업자들의 모임인 한부회가 후원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뉴질랜드측은 우선 올해에는 4만달러의 연구비와 녹용시료 50㎏을 우리측에 제공키로 했다.

생약학회측은 이와관련 △녹용을 이용한 면역증강작용과 항스트레스·항혈전작용에 대한 연구와 △항암제 부작용 감소효과에 대한 녹용 추출률의 영향 등 2가지의 금년도 연구테마를 선정하고 국립보건원과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등 3개 기관에 연구를 의뢰키로 했으며, 연구지원비가 증액되는 대로 용역연구기관의 수를 확대하여 나가기로 했다.

뉴질랜드 산 녹용은 1㎏당 가격이 3백달러 수준으로 국내 전체유통량의 60%(현지 생산량의 80%)에 달하는 4백여톤을 점유하고 있다.